

금융지원
금융 재도약지원자금 사업전환, 구조조정,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신청시기 : 연중수시 지원대상 : 중소기업 전담기관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I. 재창업자금

■ 지원대상

- 폐업이력 등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의 “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‘연체’ 신용도 판단정보 및 ‘공공정보’의 정보가 등재(등록 및 해제 사실)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
-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,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
 - (재창업자 범위)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,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·경영실권자
 - (재창업자 요건) 실패기업의 업종이 ‘비영리업종, 사회향락업종, 음식숙박업,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,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, 공공행정, 국방및사회보장행정, 가구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, 국제 및 외국기관’이 아니며, 영업실적을 보유할 것(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영업실적 보유 요건 면제)
-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
-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
- ‘중소기업창업 지원법’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
- 신용미회복자(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)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

■ 지원규모

- (대출금리(기준금리)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- (융자방식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
 - ※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,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직접대출
- (대출한도)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
 - ※ 단, 수출향상기업(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% 이상 증가),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,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(금회 포함)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
 - ※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
- (시설자금) 10년 이내(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)
- (운전자금) 6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- (지원범위)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(생산설비, 사업장 건축자금, 사업장 확보자금 등) 및 운전자금

II. 구조개선전용자금

■ 지원대상

- 다음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
- 은행권 추천 경영으로 기업 중 아래 중 1가지 해당되는 기업
 -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(ABC 등급)
 - 은행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 이행중인 경우
 -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‘요주의’ 등급 이하
 -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(-)
 - 3년 연속 이자보상배(비)율 1 미만
- 정책금융기관(중진공, 신보, 기보)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
-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
-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및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
- 전로제시 컨설팅 결과 ‘구조개선’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

■ 지원규모

- **(대출한도)** 3년간 10억원 이내의 운전자금
- **(대출기간)** 5년 이내(거치기간: 2년 이내)
- **(대출금리)**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- **(대출방식)** 직접대출
- **(기타)**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을 운전자금으로 지원가능

III. 사업전환자금

■ 지원대상

-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,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

현 영위업종	전환 진출업종
모든업종 (단, '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'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(단, 융자계획 공고상 업종 제외)	제조업 또는 서비스업*

* 서비스업은 제 10차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"농업, 임업 및 어업, 광업, 제조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, 건설업"을 제외한 업종

■ 지원내용

- 시설자금
 -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 -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
 -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
 -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
 - 사업장 건축자금, 토지구입비, 임차보증금
 - 사업장 확보(매입, 경·공매)자금

■ 운전자금

- 경영애로 해소 및 사업전환에 소요되는 비용,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

■ 지원규모

구분	용자 조건
대출한도	최대 100억원 이내 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)
대출기간	(시설자금) 10년 이내 (거치기간: 담보 5년 이내, 신용 4년 이내) (운전자금) 6년 이내 (거치기간: 3년 이내)
대출금리	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대출방식	직접대출, 대리대출*

* 자세한 사항은 '신성장기반자금' 사업의 지원내용 파트를 참조

IV. 무역조정지원사업

■ 지원대상

- FTA체결 상대국*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

* 21개 협정(총 59개국): 칠레, 싱가포르, EFTA, ASEAN, 인도, EU, 페루, 미국, 터키, 호주, 캐나다, 중국, 베트남, 뉴질랜드, 콜롬비아, 중미(2023.4월 기준)

① 전체 매출액(생산량)과 피해품목(생산량)의 매출액 감소

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	피해인정기간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
	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–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%이상 감소 – 또는 영업이익, 고용, 가동률,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	피해인정기간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
	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-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%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(단, 영업이익, 고용, 가동률,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)

②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주생산물목과 동종 또는 대체 가능한 제품(서비스)의 수입 증가

동종 또는 대체가능한 제품(서비스)	- 판단기준 : 용도, 유통경로, 물리적특성(구성요소), 품질, 관세품목분류번호(HS코드), 대체사용가능성 등 - 기업 생산물품과 수입물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일 것
수입 증가	- 관세품목분류번호(HS코드) 6~10단위 기준 - 해당 HS코드의 관세율이 FTA발효에 따라 인하 또는 철폐될 것 - 수입량이 FTA체결후 10% 이상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

■ 지원내용

① 융자지원

- 시설자금
 -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 -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
 -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
 -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
 - 사업장 건축자금, 토지구입비, 임차보증금
 - ※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(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)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
 - 사업장 확보(매입, 경·공매)자금
 - ※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
- 운전자금
 -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② 컨설팅 지원

- 무역조정계획 실행 및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·기술 전 분야

■ 지원규모

구분	융자 조건
대출한도	최대 7천만원 이내 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)
대출기간	(시설자금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5년 이내) (운전자금) 6년 이내 (거치기간 : 3년 이내)
대출금리	연 2.0% 고정금리 적용
대출방식	직접대출, 대리대출*

* 자세한 사항은 '신성장기반자금' 사업의 지원내용 파트를 참조

■ 문의처
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상담 지역본부
-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☎ (국번없이) 1357)